

군유 행정재산(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) 무상사용 동의안

의 안 번 호	372
--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. 11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평창관광문화재단이 2025. 1월 출범함에 따라 대화면 상안미리 1185-5번지에 위치한 물구비회관 건물 및 토지, 공작물을 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및 주차장,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함
- 이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 치: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1185-5번지

나. 시 설 명: 물구비회관

다. 무상사용 대상

소재지	지번	구분	면적(m ²)	시설	구조(지목)
대화면 상안미리	1185-5	토지	9,930	- 운동장, 주차장 등	대지
		건물	573.65	- 지하 1층/지상 1층 - 사무실, 회의실/기계실 등	철근 콘크리트
		공작물	-	- 정자	-

라. 내 용: 재단법인 평창관광문화재단 사무실 및 기타 부대시설

마. 사용기간: 2025. 1. ~ 2029. 12. (5년간)

마. 사용기관: 재단법인 평창관광문화재단(이사장 평창군수)

3. 참고사항

○ 위치도



○ 현장사진



관계법령 발췌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□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4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무상대부(무상사용·수익을 포함한다) 할 수 있다. 다만, 공용·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